

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 경과

- 제 출 : 2007. 1. 12.(사천시장)
- 회 부 : 2007. 1. 12.(총무위원회, 의안번호 제8호)
- 상 정 : 2007. 1. 23.(제111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세무과장 정대성)

가 제안이유

사천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200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려는 것임.

나 주요내용

- 1) 농공단지대체입주자에 대하여 감면 입주기한을 삭제함(안 제24조)
- 2)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만 감면하던 것을 형평성을 고려하여 출연법인에 대하여도 감면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7조)

다 관계법령

- 「지방세법」
- 「철도안전법」
-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송균호)

- 개정조례안은 시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6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09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고, 그 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으로
-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사천시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

지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: 없음